

동남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
동남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남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
1. 입후보 등록

가. 자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

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장 소 : 동남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직접 제출(2층 교무실)

다. 기 간 : 2020. 3. 6. ~ 3. 13. (10:00~16:00)
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사진(3×4)1매

관련 서류는 홈페이지 탑재 및 2층 교무실 비치, 입후보자께서는 방문시 마스크 착용 요망.

2. 위원선거

가. 선거일시 : 2020. 3. 19.

나. 선거장소 : 동남중학교 (장소 추후 안내)

다. 선거방법 : 직접투표로 선출

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5명

마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소견문 학교홈페이지 공지
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0. 3. 12. ~ 3. 16. (교무실)

※ 최근 정부의 행사 금지 정책에 발맞추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및 우편 투표로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3. 당선자 발표
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
2020년 3월 6일

동남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

동 남 중 학 교 장